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2017. 3. 7.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본인은 대표이사로서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거,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17 년 3 월 7 일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원 종

목 차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2
1) 조직도	2
2) 지배구조의 특징	2
3) 지배구조 현황(요약)	3
다. 관련 규정	3
2. 이사회	4
가. 역할(권한과 책임)	4
1) 총괄	4
2) 구체적 역할	4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4
나) 정관 변경	5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9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9
마) 내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10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10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10
나. 구성(이사)	11
1) 총괄	11

2) 구성원	12
3) 요약	13
다. 활동내역	14
1) 활동내역 개요	14
2) 회의 개최내역	15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17
1) 이사회 평가	17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17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18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8
가. 역할(권한과 책임)	18
나. 구성	18
다. 선임기준	19
1) 후보 자격요건	19
2) 후보 추천 절차	19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19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9
1) 활동내역 개요	20
2) 회의 개최내역	20
3) 평가	20
마. 사외이사후보 추천 관련사항	20
가) 후보자 인적사항	21

(1) 성명, (2) 출생연도, (3) 출신학교, (4) 경력, (5) 사외이사 경력	21
나) 후보 제안자	23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23
다) 후보자 추천 사유	23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2) 후보자 추천경로	23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24
마) 자격충족 여부	25
(1) 소극적 요건,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4) 본인 소명	25
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28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8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9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31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3) 후보군 현황	31
차)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31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32
5)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32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32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32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32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34
가) 사외이사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이봉연	34

(1) 활동내역	34
나) 사외이사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이봉연	34
다) 요약	35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36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36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36
1) 사외이사 조운제	36
가) 소극적 자격요건	36
나) 적극적 자격요건	36
다) 요약	37
2) 사외이사 심재우	37
가) 소극적 자격요건	37
나) 적극적 자격요건	37
다) 요약	38
3) 사외이사 오재환	38
가) 소극적 자격요건	38
나) 적극적 자격요건	38
다) 요약	39
4) 사외이사 이봉연	39
가) 소극적 자격요건	39
나) 적극적 자격요건	39
다) 요약	39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40

바. 사외이사 평가	40
1) 평가 개요	40
2) 내부평가	40
가) 내부평가 개요	40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40
(1) 총론,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41
3) 외부평가	41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41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41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41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42
1) 사외이사 조운제	42
가) 재직기간	42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42
2) 사외이사 심재우	42
가) 재직기간	42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42
3) 사외이사 오재환	43
가) 재직기간	43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43
4) 사외이사 이봉연	43
가) 재직기간	43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43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44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44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44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44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45
1) 일반	45
2) 비상계획	45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45
1) 소극적 요건	45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45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46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46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46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46
3) 후보군 현황	46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46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47
 6. 감사위원회	47
가. 역할(권한과 채무)	47
1) 총괄	47

2) 구체적 역할	47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47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47
다) 재무제표 검토 등	48
라) 기타	48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49
1) 총괄	49
2) 구성원	49
다. 활동내역 및 평가	49
1) 활동내역 개요	49
2) 회의 개최내역	50
3) 평가	51
라. 감사보조조직 등	51
 7. 위험관리위원회	 51
가. 역할(권한과 책무)	51
1) 총괄	52
2) 구체적 역할	52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52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52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52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52
마) 기타	53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53
1) 총괄	53
2) 구성원	53
다. 활동내역 및 평가	53
1) 활동내역 개요	54
2) 회의 개최내역	54
3) 평가	54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54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55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56
가. 총괄	56
나. 구성	56
1) 총괄	56
2) 구성원	57
다. 권한과 책임	57
1) 총괄	57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58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58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58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58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58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59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59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59
10) 기타	59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59
1) 의사결정 절차	59
2) 활동내역 개요	60
3) 회의 개최내역	60
4) 평가	61
2. 보수체계	61
가. 주요사항	61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61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61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61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62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62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62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62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62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63
나. 보수 세부사항	63
1) 임직원 총보수	63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63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63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63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64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64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64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64
6) 이연보수의 조정	64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65
별첨.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66
첨부 1. 회사의 정관	74
첨부 2.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82
첨부 3. 감사위원회규정	92
첨부 4. 위험관리위원회규정	96
첨부 5. 보수위원회규정	99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016 년말 현재, 총 7 인의 이사회 구성원 중 4 인이 사외이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 받지 않은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하여,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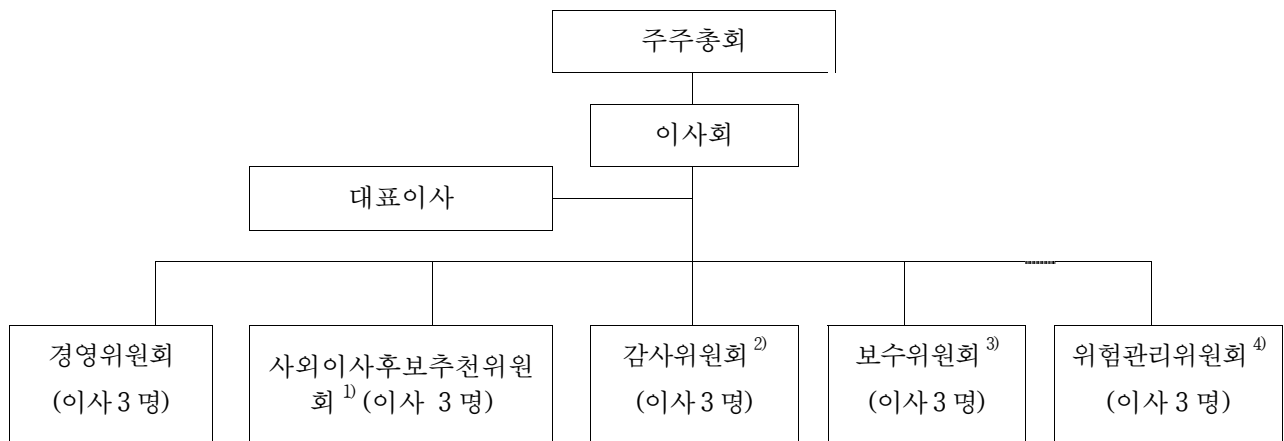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 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현황 및 이사회 등 주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수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홈페이지의 회사정보 및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www.ubs-hana.com)

회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정착을 통하여 경영환경 및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의 원칙과 정책에 대하여 매년 적정성을 평가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1)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인 2017 년 3 월 27 일에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구성 예정

2)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인 2017 년 3 월 27 일 지배구조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 예정

3) 2016 년 7 월 25 일 이사회에서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로 명칭 변경, 2017 년 3 월 27 일에 지배구조법에 따른 보수위원회 구성 예정

4)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인 2017 년 3 월 27 일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예정

2) 지배구조의 특징

2016 년 말 현재, 총 7 명의 등기이사 중 4 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인 UBS AG 및 하나금융투자(주)의 주주간 계약에 의거, 이사회 의장으로 사내이사가 선임되어 있으며, 2016.7.25. 이사회에서는 조윤제 사외이사를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¹⁾

1)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인 2017 년 3 월 27 일에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 예정.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 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의 장 (이름/상임·비상임,사 내·사외)	관 련 규 정
이사회	회사 의사결정기구	4/7	이원종/상임·사내 (조윤제 선임사외 이사/비상임.사외)	지배구조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정관 제 5 장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5 조, 제 6 조
경영위원회	경영일반에 관한 사 항 및 재무 등에 관 한 사항 결의	0/3	이원종/상임·사내	정관 제 42 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6 조 및 제 17 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¹⁾	사외이사후보추천	2/3	이원종/상임·사내	지배구조법 제 16 조 및 제 18 조 정관 제 42 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6 조 및 제 18 조
감사위원회 ²⁾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3/3	오재환/비상임·사 외	지배구조법 제 16 조 및 제 20 조 정관 제 42 조 및 제 6 장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6 조 및 제 19 조
보수위원회 ³⁾	임직원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승인	2/3	이원종/상임·사내	지배구조법 제 16 조 및 제 22 조 정관 제 42 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6 조 및 제 20 조
위험관리위원 회 ⁴⁾	회사 위험관리 기구	-	-	지배구조법 제 16 조 및 제 21 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6 조 및 제 21 조

1)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인 2017 년 3 월 27 일에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구성 예정

2)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인 2017 년 3 월 27 일 지배구조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 예정

3) 2016 년 7 월 25 일 이사회에서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로 명칭 변경, 2017 년 3 월 27 일 지배구조법에 따른 보수위원회 구성 예정

4)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인 2017 년 3 월 27 일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예정

다. 관련 규정

첨부 1. 회사 정관

첨부 2. 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회사의 이사회는 건전 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에 대한 승인 및 평가를 합니다. 경영목표·전략 관련한 실무업무는 회사의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이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정관 제 39 조제 2 항제 1 호)

이에 따라, 2016.12.8. 개최된 이사회에서 2017 년 경영목표를 승인하였으며, 매 분기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중간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에서 승인된 2017 년 주요 경영목표는 시장점유율 2.3% 달성, 신규 순유입 자금 1.5 조원, 신규 순유입자금에 따른 예상수익 15 억원 및 보너스 차감전 공헌이익으로 146 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 안을 심의·결의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2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2 호)

회사는 2016 년 6 월 2 일 개최된 제 2016 년 제 3 차 이사회에서 2016 년 8 월 1 일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정관변경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 하였고, 2016 년 7 월 25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2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 변경을 하였으며,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정관 변경 대비표 (2016.7.25)

변경 전	변경 후
제 32 조(이사의 수) ②이사는 비사외이사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사외이사로 구분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2 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3 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 32 조(이사의 수) ②이사는 <u>상임이사</u> , <u>비상임이사(이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합하여 “비사외이사”라</u>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의미한다)와 사외이사로 구분하며, <u>상임이사는 이사총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1 인 이상으로 하고</u> ,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u>과반수 2 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3 인 이상이어야 한다.</u>
제 33 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33 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u>임원후보추천위원회</u> 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변경 전	변경 후
제 36 조(대표이사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6 조(대표이사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u>다만,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u>
제 39 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 39 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u>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u>
	(신설) ② <u>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u>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u>정하는 사항</u>
	제③항 에서 제⑤항 변경 전과 같음, 단 제②항의 신설에 따른 연번 변경 (‘제②항~ 제④항’에서 ‘제③항 에서 제⑤항’으로
제 42 조(위원회) ①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경영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제 42 조(위원회) ①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경영위원회 2. <u>임원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u> 3. 감사위원회 4. <u>위험관리위원회</u> 5. <u>보수위원회</u>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u>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u>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43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 43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u>단, 상임이사의 보수는 사전에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u>
제 45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②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 45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②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u>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제 1 항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u>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을 둘 경우 그 위원은 자본시장법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을 둘 경우 그 위원은 자본시장법

변경 전	변경 후
제 24 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24 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④ <u>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한다.</u>
	제⑤항 변경 전과 같음, 단 제④항의 신설에 따른 연번 변경, 제④항에서제⑤항으로
	(신설) ⑥ <u>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총 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신설) ⑦ <u>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u>
	(신설) ⑧ <u>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u>
	부칙 (8) 이 정관은 2016 년 7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 2016 년 7 월 25 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정관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주총 직후 소집된 임시이사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이사회는 회사의 결산 및 예산 안을 승인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3 호)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업무집행책임자는 2016 년 1 월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고, 2015 년 2 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에 보고했으며, 2016.2.15.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2015 회계연도: 2015.1.1 ~ 2015.12.31.
- 수익: 343 억원
- 비용: 189 억원
- 법인세차감전이익: 154 억원
- 당기순이익: 120 억원
- 현금배당: 109 억원

또한, 2016.12.8.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7 년 예산(안)을 승인 하였습니다.

- 수익: 284 억원
- 직접비용: 160 억원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영업양수도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4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4 호)

또한, 본부신설·폐지 등 회사 조직의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조직 변경 내용은 2016 년에는 2.15. 이사회, 3.29. 이사회, 6. 2. 이사회, 9.8. 이사회, 12. 8.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 · 평가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5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5 호)

2016.9.8. 이사회에서는 지배구조법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 개정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 · 정책의 수립 · 평가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6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6 호)

2016.7.25. 이사회에서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정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2016 년 회사의 이사 선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외이사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이봉연의 임기 만료에 따라 2016. 3.29.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운제(중임), 심재우(중임), 오재환(중임), 이봉연(신임)을 2016.3.29.부터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 까지를 임기로 하여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조속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도덕성, 그룹가치 구현 능력, 업무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 · 감독

이사회는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7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7 호)

2016.12.8. 이사회에서는 대주주 UBS AG 의 계열사와의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비용 지급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회사 이사회의 이사의 수는 총 6 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이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합하여 “비사외이사” 라 한다)와 사외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는 이사 총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1 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최소 3 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 제 32 조). 이는 지배구조법 상의 최소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법 제 12 조)

2016 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7 인의 이사(대표이사를 포함한 3 인의 비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포함한 사외이사 4 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사외이사의 임기는 3 년 이하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1 년 이하입니다. (정관 제 34 조) 단, 사외이사는 회사에서 6 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그 임기가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6 조)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6 조)

회사 주주들 간의 계약에 따라 이사회 의장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원중 사내이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2016. 7.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윤제 사외이사를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13 조)

2) 구성원

가) 이사회 의장

이원중

비사외/상임

대표이사

2015. 7. 1. 취임

UBS 그룹 아태지역 고객본부 총괄 및 경영실 실장 역임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나) 이사

김영철

비사외/상임

부사장

2015. 4. 1. 취임

하나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및 심사그룹 총괄 부행장 역임

경영위원회

조윤제

사외/비상임

2012. 6.21. 취임, 2013. 6.27. 중임, 2014. 3.27. 중임, 2015. 3.26. 중임, 2016.3.29.

중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주 영국 특명 전권 대사 역임

보수위원회

심재우

사외/비상임

2013. 6.27. 취임, 2014. 3.27. 중임, 2015. 3.26. 중임, 2016.3.29. 중임

미국러거스대학교 교환교수 및 단국대학교 교수 역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오재환

사외/비상임

2014. 3.27. 취임, 2015. 3.26. 중임, 2016.3.29. 중임

외환은행 강남영업본부장 및 고문 역임

감사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이봉연

사외/비상임

2015. 3.26. 취임, 2016.3.29. 중임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부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레네부엘만

비사외/비상임

2014. 7.18. 취임

UBS 자산운용 아태지역 대표

UBS Wealth Management 홍콩, 글로벌펀드 투자상품부분 대표 역임

경영위원회

3) 요약

성명	사내·사외/ 상임·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취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기간 (2016.12. 말 기준)	담당위원회
----	------------------	----	----	-----------	-----------	----------------------------	-------

성명	사내/사외/ 상임/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취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기간 (2016.12. 말 기준)	담당위원회
이원중	사내/상임	이사회 의장	- 현)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 전)UBS 그룹 아태지역 고객본부 총괄 및 경영실 실장	2015. 7. 1.	2018. 6.30.	17 개월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김영철	사내/상임		- 현)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부사장 - 전)하나은행 심사그룹 총괄 부행장	2015. 4. 1.	2017. 3.31	20 개월	경영위원회
조운제	사외/비상임		- 현)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 전)주 영국 특명 전권 대사	2012. 6.21.	2017. 3.27.	54 개월	보수위원회
심재우	사외/비상임	감사위원	- 전)미국러거스대학교 교환교수 - 전)단국대학교 교수	2013. 6.27.	2017. 3.27	42 개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오재환	사외/비상임	감사위원 (위원장)	- 전)외환은행 강남영업본부장 - 전)외환은행 고문	2014. 3.27	2017. 3.27	33 개월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이봉연	사외/비상임	감사위원	- 현)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부장 - 전)외환은행 재무기획부	2015. 3.26	2017. 3.27	21 개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레네 부엘만	사내/비상임		- 현) UBS 자산운용 아.태지역 대표 - 전) UBS Wealth Management 투자상품부문 대표	2014. 7.18	2017. 7.17	29 개월	경영위원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6 년중 총 6 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의 참석률은 약 86%입니다. 2016. 2.15.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2015 년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배당금지급계획 및 영업보고서를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16. 3.29.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16. 3.29.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이봉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2016. 3.29.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추천 후보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16. 3.29.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이원중, 김영철, 레네부엘만으로 경영위원회를, 이원중, 심재우, 이봉연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심재우, 오재환, 이봉연으로 감사위원회를, 이원중, 조운제, 오재환으로 보상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16.6.2. 이사회에서는 황재홍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것과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16.7.25.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16. 7.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지배구조법을 반영, 정관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어 개최된 2016.7.25. 이사회에서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정을 결의하였고, 위험관리업무책임자로 사공경렬을 전략관리업무책임자 및 재무관리업무책임자로 박중화를 선임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조운제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16.9.8.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내부통제기준 및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결의하였고, 기존 보상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보수위원회 규정을 제정할 것과 보상위원회 명칭을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위원회로 바꿀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16.12. 8. 이사회에서는 2017 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2017 년도 위험한도¹⁾ 및 회사가 UBS 계열사들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각 이사회에서 회사의 사업, 운용성과, 영업활동 및 주요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경영목표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6.30. 사외이사 회의를 개최, 2016.8.1. 시행 예정인 지배구조법 및 이에 따른 회사 내부규정의 제·개정 필요성,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주요업무집행 책임자의 선임 등에 관한 논의 및 회사 운용 펀드의 수익률 제고 방안, 회사의 소송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1)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에 위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2016.12.8. 이사회에서 위험관리위원회를 대신하여 2017 년도 위험한도를 승인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6 년도 제 1 차 이사회: 2016.2.15. 오후 2 시 (안전통지일: 2016.2.5.)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원종	김영철	레네부엘만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이봉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2016 년 결산 재무제표, 배당금지급 계획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정기주주총회소집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6 년도 제 2 차 이사회: 2016.3.29. 오후 2 시 40 분 (안전통지일: 2016.3.22.)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원종	김영철	레네부엘만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이봉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보고안전 없음)	-	-	-	-	-	-	-	
4.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재구성								
	나. 감사위원회 재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보상위원회 재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6 년도 제 3 차 이사회: 2016.6.2. 오후 2 시 40 분 (안전통지일: 2016.5.26.)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원중	김영철	레네부엘만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이봉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	-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준법감시인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시주주총회소집 (정관변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6 년도 제 4 차 이사회: 2016.7.25. 오후 2 시 30 분 (안전통지일: 2016.7.18.)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원중	김영철	레네부엘만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이봉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보고안전 없음)	-	-	-	-	-	-	-	
4. 의결안건								
가. 지배구조내부규범제정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선임사와이사의 선임	찬성	찬성	-	의결권제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16 년도 제 5 차 이사회: 2016.9.8. 오후 2 시(안전통지일: 2016.9.1.)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원중	김영철	레네부엘만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이봉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	-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기준/위험관리 위원회 규정 제정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통제기준개정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감사위원회규정개정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보수위원회규정제정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16 년도 제 6 차 이사회: 2016.12.8. 오후 2 시(안전통지일: 2016.12.1.)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원중	김영철	레네부엘만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이봉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2017 회 사 위 협 한 도 승 인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회 사 와 UBS 계 열 사 와 의 서 비 스 계 약 재 결 및 비 용 지 급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회사는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부서에 일임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당 금융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이사회 규모의 적정성,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경영진 자문·감독 기능 수행, 의사결정에 금융회사의 윤리적 의무 및 사회적 책임사항 반영, 자료 제공의 적시성, 자료의 충실성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위임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회사의 주주인 UBS AG, 하나금융투자(주)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UBS AG에서 지명한 대표이사 후보를 하나금융투자(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인 이원종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13 조에 따라, 2016.7.25.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조운제를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조운제 사외이사는 경제분야의 전문가로 2012년 6월부터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간 협약에 근거하여, 주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아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극적 자격요건, 책임성, 윤리성, 충실성 등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과정을 거쳐 선택된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회사는 2017.8.1.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2017년 정기 주주총회일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재구성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내부규정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나. 구성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1인을 선임,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7%로 사외이사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명	상임.비상임/사외/ 사내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주요약력
조운제	비상임.사외	위원	2015.3.26~2016.3.29	서강대국제대학원 교수
심재우	비상임.사외	위원	2016.3.29 ~2017.3.27	단국대학교 교수
이봉연	비상임.사외	위원	2015.3.26~2016.3.29	하나금융지주재무기획팀 부장
			2016.3.29~2017.3.27	(중임)
이원중	상임.사내	위원장	2015.7.1~2016.3.29	하나유비에스 대표이사
			2016.3.29~2017.3.27	(중임)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사외이사후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소극적 자격요건, 책임성, 윤리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¹⁾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16.8.1.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 개최되었으므로 이전 자본시장법 상의 요건을 검토하였으며, 2017 정기주주총회일 이후, 관련 내부 규정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간 협약에 근거하여, 주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아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 이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후보추천후보위원회로 재정비 후, 관련 내부규정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6 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 회 개최되었으며, 기간 중 부의된 결의 안건은 사외이사후보 4 인에 대한 심의 안건이었으며, 위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6 년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6. 3.28. 서면회의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원중	조운제	이봉연	
1. 이사 성명	이원중	조운제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심의)안건				
가. 조운제 사외이사 후보 (UBS AG 주주 추천)	찬성	의결권제한 ¹⁾	찬성	가결
나. 심재우 사외이사 후보 (UBS AG 주주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오재환 사외이사 후보 (하나금융투자주주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이봉연 사외이사 후보 (하나금융투자주주 추천)	찬성	찬성	의결권제한 ¹⁾	가결

1)사외이사 본인 건으로 가부 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평가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 이후, 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재구성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 사외이사후보 추천 관련사항

1)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이봉연

(2) 출생연도

조운제 (1952 년), 심재우 (1958 년), 오재환 (1957 년), 이봉연 (1966 년)

(3) 출신학교

조운제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0 년),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976 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박사 (1984 년)

심재우

미국 뉴욕 브루클린 과학고등학교 졸업 (1977 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생물공학과 학사 (1982 년), 화학공학과 석사 (1984 년), 화학공학과 박사 (1993 년)

오재환

대전고등학교 졸업 (1977 년),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984 년)

이봉연

마산고등학교 졸업 (1985 년),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1992 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1994 년)

(4) 경력

조운제

1997.3. ~ 2003.2.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03.2. ~ 2005.2. 대통령 경제보좌관

2005.2. ~ 2008.2. 주 영국 특명 전권 대사

2008.3. ~ 2016.12. 현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심재우

1996.3. ~ 2016.12. 현재, 단국대학교 교수

2007.9. ~ 2011. 6. 세이에셋코리아 감독이사

오재환

2007.8. ~ 2009.8. 외환은행 개인마케팅부장

2009.8. ~ 2012.12. 외환은행 강남영업본부장

2013.1. ~ 2013.6. 외환은행 고문

이봉연

2015.1. ~ 2016.12. 현재,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부장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2015.1. ~ 2016.12. 현재, 하나자산운용(주) 사외이사

(5) 사외이사 경력

조윤제

사외이사 기간: 2012 년 6 월부터

활동내역: 이사회 참석 26 회 (참석률: 81%), 위원회 참석 9 회 (참석률 100%)

주요사안: 사외이사후보,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KPI 승인

심재우

사외이사 기간: 2013 년 6 월부터

활동내역: 이사회 참석 23 회 (참석률: 96%), 위원회 참석 10 회 (참석률 100%)

주요사안: 임원보수한도,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KPI 승인

오재환

사외이사 기간: 2014 년 3 월부터

활동내역: 이사회 참석 21 회 (참석률: 100%), 위원회 참석 3 회 (참석률 100%)

주요사안: 임원보수한도,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KPI 승인

이봉연

사외이사 기간: 2015 년 3 월부터

활동내역: 이사회 참석 9 회 (참석률: 75%), 위원회 참석 4 회 (참석률 80%)

주요사안: 사외이사후보,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KPI 승인

※ 참석율은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임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이원중

2015.7.1 ~ 2016.12.31 현재,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사내이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와 추천 후보들 간에는 회사의 이사회 활동을 같이 한 것 외에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조윤제는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정책, 화폐금융경제 전문가 입니다. 회사와의 거래 관계는 없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심재우는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주)빙그레의 경영자문,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경영관련 전문가 입니다. 회사와의 거래 관계는 없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오재환은 외환은행 강남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한 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와의 거래 관계는 없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이봉연은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부장으로, 금융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와의 거래 관계는 없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조운제, 심재우 후보는 회사 주주인 UBS AG, 오재환, 이봉연 후보는 회사 주주인 하나금융투자(주)가 추천한 후보입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조운제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심재우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오재환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이봉연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¹⁾

(1) 소극적 요건

조윤제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평가: 관련법령 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심재우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평가: 관련법령 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오재환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평가: 관련법령 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이봉연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평가: 관련법령 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주주간 협약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추후 주주간 협약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내부 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조윤제

(가) 전문성

경제 금융 전문가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고도의 윤리성과 이사회 등의 의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이행하는 등 책임성을 갖추었습니다.

(라) 충실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충실히 참석하였습니다.

심재우

(가) 전문성

경제 금융 전문가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고도의 윤리성과 이사회 등의 의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이행하는 등 책임성을 갖추었습니다.

(라) 충실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충실히 참석하였습니다.

오재환

(가) 전문성

경제 금융 전문가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고도의 윤리성과 이사회 등의 의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이행하는 등 책임성을 갖추었습니다.

(라) 충실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충실히 참석하였습니다.

이봉연

(가) 전문성

경제 금융 전문가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고도의 윤리성과 이사회 등의 의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이행하는 등 책임성을 갖추었습니다.

(라) 충실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충실히 참석하였습니다.

(4) 본인 소명

별첨 '사외이사후보 추천내역'의 “사” 항목 참조

- 1) 2016 년 사외이사후보추천 및 선임은 지배구조법 시행일 이전인 2016.3.28. 실시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이봉연 4 명의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위하여 2016.3.28.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후보자들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적극적 요건을 충족시킴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은 재적위원 3 명 중 3 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16 년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4 명이며 이중 4 명이 연임하였으며 내부 평가 결과 연임한 사외이사 모두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 출석율
조운제	2012. 6.21~2017. 3.27	연임	81%
심재우	2013. 6.27~2017. 3.27	연임	96%
오재환	2014. 3.27~2017. 3.27	연임	100%
이봉연	2015. 3.26~2017. 3.27	연임	75%

※재임기간 및 참석율은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임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조윤제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1970),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1976), 미국 Stanford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박사(1984)

경력: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2008.3 ~ 현재)

이사회 활동 내역:

사외이사 기간: 2012 년 6 월부터

주요사안: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이원종 위원 추천 / UBS AG 추천

법령 상의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하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 충족

기타 결격 사유 없음

심재우

학력: 미국 뉴욕 부르클린 과학고등학교 졸업(1977),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 생물공학과 학사(1982),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 화학공학과 석사(1984),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 화학공학과 박사(1993)

경력: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1996.3 ~ 현재)

이사회 활동 내역:

사외이사 기간: 2013 년 6 월부터

주요사안: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이원중위원 추천 / UBS AG 추천

법령 상의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하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 충족

기타 결격 사유 없음

오재환

학력: 대전고등학교 졸업(1977),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84)

경력: 외환은행 강남영업본부장(2009.8). 외환은행 고문(2013.1)

이사회 활동 내역:

사외이사 기간: 2014 년 3 월부터

주요사안: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이원중 위원 추천 / 하나금융투자(주) 추천

법령 상의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하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 충족

기타 결격 사유 없음

이봉연

학력: 마산고등학교 졸업 (1985),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1992),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1994)

경력: 외환은행 (1994.2 ~ 2014.12),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2015.1~ 현재)

이원종 위원 추천 / 하나금융투자(주) 추천

이사회 활동 내역:

사외이사 기간: 2015 년 3 월부터

주요사안: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법령 상의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하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 충족

기타 결격 사유 없음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및 이봉연은 전문성 경력 등에 비추어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업무 수행을 할 충분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추었으며, 법령 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키므로, 사외이사 후보로 적합하다 평가.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향후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해당 내용 없음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해당 내용 없음

5)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해당 내용 없음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제 1 절 지배구조연차보고서, 2. 이사회, 다. 활동내역, 2) 회의개최내역 참조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6 년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6. 3.28. 서면회의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원중	조윤제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심의)안건				
마. 조윤제 사외이사 후보 (UBS AG 주주 추천)	찬성	의결권제한 ¹⁾	찬성	가결
바. 심재우 사외이사 후보 (UBS AG 주주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오재환 사외이사 후보 (하 나금융투자주주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이봉연 사외이사 후보 (하나금융투자주주 추천)	찬성	찬성	의결권제한 ¹⁾	가결

2) 사외이사 본인 건으로 가부 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다) 감사위원회

제 2016 년도 제 19 차 감사위원회: 2016. 3.10 (서면회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운제	심재우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 호 안건(2016 년 감사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 안건(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인 변경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 안건(내부감사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 2016 년도 제 20 차 감사위원회: 2016. 6. 2 (13 시 30 분)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오재환	심재우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				
가. 1 호 안건(2016 년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보고)	보고	보고		-

제 2016 년도 제 21 차 감사위원회: 2016.12. 8 (13 시 30 분)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오재환	심재우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1 호 안건(2016 년 하반기 내부감사 결과보고)	보고	보고	보고	-
4. 의결안건				
가. 1 호 안건(2017 년 내부감사 실시계획)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위험관리위원회

2016년 9월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위험관리위원회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원회는 2017년 정기 주주총회일에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위험한도는 2016년 12월 8일 위험관리위원회를 대신하여, 이사회에서 승인 하였습니다.

마) 보수위원회¹⁾

2016년도 보상위원회: 2016.3.28. 서면회의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원중	심재우	오재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15 이사보수 집행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3. 의결(심의)안건				
가. 2016 이사보수 한도 (31억 원)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지배구조법 시행일 이전, 보상위원회로 개최되었습니다.

바) 기타 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조윤제

사외이사 조윤제는 2016년 중 개최된 총 6회의 이사회 중 5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1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회사 현황, 회사 운용 펀드 및

관련 시장 상황 등에 대하여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2016 년 중 1 회 개최된 사외이사회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심재우

사외이사 심재우는 2016 년 중 개최된 총 6 회의 이사회 모두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3 회와 보상위원회 1 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회사 현황, 회사 운용 펀드 및 관련 시장 상황 등에 대하여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2016 년 중 1 회 개최된 사외이사회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 오재환

사외이사 오재환은 2016 년 중 개최된 총 6 회의 이사회 모두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2 회와 보상위원회 1 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회사 현황, 회사 운용 펀드 및 관련 시장 상황 등에 대하여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2016 년 중 1 회 개최된 사외이사회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16 년 중 1 회 개최된 사외이사회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 이봉연

사외이사 이봉연은 2016 년 중 개최된 총 6 회의 이사회 모두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2 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회사 현황, 회사 운용 펀드 및 관련 시장 상황 등에 대하여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2016 년 중 1 회 개최된 사외이사회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16 년 중 1 회 개최된 사외이사회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나) 요약

구분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시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명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실적
조운제	6	5	13	1	1	3	-	-	-	1	1	1	
심재우	6	6	16	-	-	-	1	1	1	3	3	3	
오재환	6	6	16	-	-	-	1	1	1	2	2	2	
이봉연	6	6	16	1	1	3	-	-	-	3	2	2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회사는 대주주인 UBS Group 에서 가입한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함께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 배상액 한도는 USD50,000,000 이며, 임원의 전문적 업무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배상합니다.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매 이사회 개최 시 자산운용 전반, 시장 동향, 회사의 사업에 대한 보고와 질의 응답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연수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¹⁾

1) 사외이사 조운제

가) 소극적 자격요건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의 에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경제전문가로서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소유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추천
2) 적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성)	충족	경제 전문가 (교수)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 책임감 소유
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마.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지식/실무경험)	충족	경제학 박사, 국제금융기관 근무

2) 사외이사 심재우

가) 소극적 자격요건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의 에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국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펀드회사에서 펀드 감독 및 국내 회사의 경영 자문을 한 경력이 있으며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소유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	------	-------

1) 소극적 요건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지배구조법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지배구조법제 5 조	충족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추천
2) 적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성)	충족	국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펀드회사에서 펀드 감독 및 국내 회사의 경영 자문 (공학박사)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 책임감 소유
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마.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지식/실무경험)	충족	글로벌펀드회사 감독이사 및 국내상장회사 경영자문 경력

3) 사외이사 오재환

가) 소극적 자격요건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의 에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다년 간 은행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소유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지배구조법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지배구조법제 5 조	충족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추천
2) 적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성)	충족	금융전문가 (은행 영업 업무 담당)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 책임감 소유
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마.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지식/실무경험)	충족	은행 영업업무 담당 경력

4) 사외이사 이봉연

가) 소극적 자격요건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의 에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다년 간 은행에서 영업 업무 및 재무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금융지주회사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소유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지배구조법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지배구조법제 5 조	충족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추천

2) 적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성)	충족	금융전문가 (은행 영업 업무 담당)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 책임감 소유
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마.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지식/실무경험)	충족	은행 영업업무 담당 경력

1) 지배구조법 시행일 이전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해당 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사외이사의 임기를 1 년으로 제한하되 관련 법에 따라 5 년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 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이사회와 이사회운영위원회(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에 의한 내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 시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외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2016 년 말 현재,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내부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횟수, 업무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 등을 기준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사외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 출석률과 참여도 회사 업무의 이해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4 인의 사외이사 모두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기타	
조운제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	-
심재우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	-
오재환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	-
이봉연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	-

3) 외부평가

2016 년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조운제 선임사외이사는 2016.6.30. 사외이사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의 현안 및 지배구조법 시행에 대하여 사외이사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회사는 별도의 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조윤제

가) 재직기간

약 4 년 6 개월 (2012.6.21. ~ 2017.3.27.)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320 만원	
	기본금	4,320 만원	월 기본금 360 만원 X 12 개월
	상여금	없음	
	기타 수당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없음	
	건강검진 지원	없음	
	차량제공	없음	
	사무실제공	없음	
	기타 편익제공	없음	

2) 사외이사 심재우

가) 재직기간

약 3 년 6 개월 (2013.6.27. ~ 2017.3.27.)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320 만원	
	기본금	4,320 만원	월 기본금 360 만원 X 12 개월
	상여금	없음	
	기타 수당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없음	
	건강검진 지원	없음	
	차량제공	없음	
	사무실제공	없음	
	기타 편익제공	없음	

3) 사외이사 오재환

가) 재직기간

약 3년 (2014.3.27. ~ 2017.3.27.)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320 만원	
	기본급	4,320 만원	월 기본급 360 만원 X 12 개월
	상여금	없음	
	기타 수당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없음	
	건강검진 지원	없음	
	차량제공	없음	
	사무실제공	없음	
	기타 편익제공	없음	

4) 사외이사 이봉연

가) 재직기간

약 2년(2015.3.26. ~ 2017.3.27.)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해당사항 없음	
	기본급	해당사항 없음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기타 수당	해당사항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사항 없음	

※ 재직기간은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해당 내역 없음

차. 최근 5 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재임기간	담당위원회	직위	주요경력
유장희	2007.07.27.	2012.06.21.	59 개월	감사위(2007.07.~) 사추위(2007.07.~)	감사위원장 (2007.07~2012.06)	이화여대 교수
조기욱	2008.06.27.	2011.02.18.	32 개월	감사위(2008.06.~) 사추위(2008.06.~)		하나금융지주 부 사장
황석희	2009.12.01.	2013.06.27.	42 개월	감사위(2009.02.~) 보상위(2009.02.~)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
함성득	2010.03.05.	2013.06.27.	33 개월	보상위(2010.03.~)		고려대 교수
강승원	2011.02.18.	2012.08.24.	18 개월	감사위(2011.02.~) 사추위(2012.08.~)		하나금융지주 상무
조윤제	2012.06.21.	2017.03.27.	54 개월	감사위(2012.06.~) 사추위(2015.03.~) 보수위(2016.03.~)	감사위원장 (2012.06.~2016.06)	서강대 교수
심재우	2013.06.27.	2017.03.27.	42 개월	감사위(2013.06.~) 보상위(2013.06.~) 사추위(2016.03.~)		단국대 교수
주재중	2013.06.27.	2014.03.05.	9 개월	감사위(2013.06.~) 사추위(2013.03.~)		하나금융지주 상무
김진성	2013.06.27.	2014.03.27.	9 개월	보상위(2013.06.~)		하나은행 부행장
변재연	2014.06.27.	2015.03.26	6 개월	감사위(2014.06.~) 사추위(2014.03.~)		하나금융지주 재 무기획팀장
오재환	2014.03.27.	2017.03.27	36 개월	보상위(2014.06.~) 감사위(2016.03.~) 보수위(2016.03.~)	감사위원장 (2016.03.~2017.03.)	외환은행 본부장
이봉연	2015.03.26.	2017.03.27.	24 개월	감사위(2015.03.~) 사추위(2015.03.~)		하나금융지주 재 무기획팀부장

※ 재직기간은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 및 주주간 협약을 반영한 내부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는 주주간 협약에 따라 최대주주인 UBS AG로부터 지명 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하나금융투자(주)의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별도의 비상계획절차를 제정하지 않았지만, 정관 제 37 조 '이사의 직무'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지배구조법 제 5 조
- 평가: 이원종 대표이사는 자본시장법제 24 조 및 지배구조법 제 5 조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32 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 평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32 조에서는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원종 대표이사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글로벌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상품본부장 및 마케팅 부분 본부장을 역임하며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여 왔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 공익성 및 건전 경영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자로 평가됩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2016년 해당 내역 없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주주간 협약을 반영하여 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해당내역 없음

3) 후보군 현황

해당 내역 없음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별도의 승계계획은 없으나, 주주간 협약에 따라 최대주주인 UBS AG 지명 후보에 대한 관련 법령 상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최고경영자를 선임하여 왔습니다. 추후, 지배구조법 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영승계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회사는 별도의 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 및 적정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감사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해당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 412 조)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 402 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들은 2016 년도에 경영진으로부터 3 회에 걸쳐 사업실적, 재무상황, KPI 및 위험통제와 오퍼레이션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 조, 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나, 2016 년도에 외부감사인의 교체사유가 없어 외부감사인의 교체선임에 대한 승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검토를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6 년 3 월 10 일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을 검토 하였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외감법 시행령 제 7 조)

검토 결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준법감시인이 수행한 내부통제점검 결과의 중요 내용을 보고받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6 년도 제 20 차 감사위원회(2016. 6. 2.)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2016 년 상반기 내부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받았고, 2016 년도 제 21 차 감사위원회(2016.12. 8)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2016 년 하반기 내부감사결과 및 2017 년 연간 내부감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마)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5 조)

2016 년도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 교체사유가 있어, 감사위원회는 2016 년도 제 19 차 감사위원회(2016. 3.10)에서 관리본부장으로부터 회계감사인 2 개사

-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서 1 개사 “한영회계법인“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제출 받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 교체선임에 대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1 인 이상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합니다. 또한, 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은 사
외이사이어야 한다.

2) 구성원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조운제	사외	위원장	2015. 3.26	2016. 3.29
오재환	사외	위원장	2016. 3.29	2017. 3.27
심재우	사외	위 원	2015. 3.26	2017. 3.27
이봉연	사외	위 원	2015. 3.26	2017. 3.27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6 년에는 총 3 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부의 안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였으며,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해 보고받고, 점
점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 의안을 감사위원들에게 공유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하여 감사위원들의 이
해를 돕고 있어, 다양한 전문적인 배경을 지닌 위원들이 감사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 2016 년도 제 19 차 감사위원회: 2016. 3.10 (서면회의)

[안건 통지일: 2016. 3. 4]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운제	심재우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 호 안건(2016 년 감사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 안건(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인 변경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 안건(내부감사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 2016 년도 제 20 차 감사위원회: 2016. 6. 2 (13 시 30 분)

[안건 통지일: 2016. 5.2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오재환	심재우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				
가. 1 호 안건(2016 년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보고)	보고	보고		-

다) 제 2016 년도 제 21 차 감사위원회: 2016.12. 8 (13 시 30 분)

[안건 통지일: 2016.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운제	심재우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1호 안전(2016년 하반기 내부감사 결과보고)	보고	보고	보고	-
4. 의결안건				
가. 1호 안전(2017년 내부감사 실시계획)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감사위원회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 제공여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 조직

부서명	컴플라이언스, 소비자보호&감사본부
인원	4명

- 보고 및 지원내용

일자	대상	내용
2016. 3.10.	제 19 차 감사위원회	2015년 재무제표 감사보고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인 변경선임 2016년 연간내부감사 실시계획 보고
2016. 6. 2.	제 20 차 감사위원회	2016년 상반기 내부감사결과 보고
2016.12. 8.	제 21 차 감사위원회	2016년 하반기 내부감사결과 보고 2017년 연간내부감사 실시계획 보고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 이사회 의 위임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및 고유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의 심의·의결 등 위험관리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위험관리의 기본방침은 회사의 위험관리는 위험과 수익간 적절한 균형관계를 달성하고, 회사와 그룹의 평판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종류별로 인식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험관리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UBS 그룹의 위험관리조직 및 정책과 연계하여, 회사 사업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관리조직의 운영, 위험관리 체계 및 전략을 수립합니다.

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는 국내외 경제환경, 금융환경 및 회사의 재무상황을 바탕으로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15일에 개최된 2016년 제1차 이사회에서 위험관리 기본방침,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에 대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심의의결하며, 2016년 2월 15일에 개최된 2016년 제1차 이사회에서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의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에 대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 위험 및 손실허용한도에 대한 승인은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미 구성으로 2016년 12월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금융환경의 변화 및 제도변경 등을 반영하여 기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6년 8월 1일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미 구성으로 2016년 9월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마) 기타

위험관리위원회는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내위원으로 구성된 리스크 / Front To Back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현황 및 의사록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인 이상 3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일반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2) 구성원

2017년 정기주주총회일인 2017년 3월 27일 선임된 이사들로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를 구성 예정입니다.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에서 담당)

2) 회의 개최내역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에서 담당)

3) 평가

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의사록 등을 통하여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 제공여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등을 바탕으로 위험관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여 위원회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조치일자	감독기관	양정구분	귀책사항
2016. 6.30	금융감독원	경영유의사항 자율처리필요사항	채권 사전자산배분 절차 위반

가. 경영유의사항

회사는 가) 채무증권 관련 매매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고 나) 채권 사전자산배분의 적정성 사후점검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내부감사 점검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다) 정기적으로 채권 사전자산배분에 대한 내부감사 실시계획과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치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회사는 2016년 9월 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9월 9일 해당 운용역 3명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습니다.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이사회내위원회로 보상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2009년 5월 22일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사외이사 선임 시 재구성하고 있으며, 의사진행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의사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2016년 9월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근거로 보수위원회규정을 제정 하였으며, 2017년 정기주주총회일 이후 본 보상위원회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보수위원회로 변경 재구성될 예정이며, 보수관련 세부사항은 보수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수위원회 규정 제 2조에 의거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합니다.

2) 구성원

2016 년 말 기준으로 회사의 보상위원회는 이원종 대표이사, 조운제 사외이사, 오재환 사외이사이며, 위원 중 1 인 이상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하고 있습니다.

2017 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지배구조법에 따른 보수위원회로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이원종	상임	위원장	'15. 7. 1	'18. 6. 30
심재우	사외	위 원	'15. 3. 26	'16. 3. 29
조운제	사외	위 원	'16. 3. 29	'17. 3. 27
오재환	사외	위 원	'16. 3. 29.	'17. 3. 27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
-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3) 보수체계의 설계, 운영 및 그 설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포함)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17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2017년 4월 15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17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2017년 4월 15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17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2017년 4월 15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2017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2017년 4월 15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2017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후 2017년 4월 15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2017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 후 2017년 4월 15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당사의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는 해외 사업장이 없음에 따라 국내에 한해서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2017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2017년 4월 15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해당사항 없음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 위원회는 연 1 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각 위원에게 회의 최소 1 주일전에 소집사실을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는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위원회가 개최된 후 동 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추가 권고사항이나 승인사항은 이메일을 포함한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토의 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위원회에 출석한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의사록으로 입증된다.
-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활동내역 개요

2016 년 3 월 28 일에 서면으로 보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서면 참석률 100%입니다. 개최된 보상위원회에서는 2015 년도 이사보수가 2015 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31 억원)내에서 집행되었음을 보고했고, 2016 년도 이사보수 한도도 2015 년과 동일(31 억원)하게 2016 년 정기주주총회에 건의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2016 년도 보상위원회: 2016.3.28. 서면회의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원중	심재우	오재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2015 이사보수 집행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3. 의결(심의)안건				
2016 이사보수 한도 (31 억 원)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상기 내용은 기존의 '보상위원회' 활동내역이며, 새로운 지배구조법에 따라 2017 년 정기주주총회일 이후 보수위원회로 변경 구성될 예정입니다.

4) 평가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일 이후, 회사는 보상위원회를 지배구조법에 따른 보수위원회로 재구성하여,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이연보수의 조정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며, 2017 년 4 월 15 일까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 규정 (첨부)

첨부 3.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 4.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첨부 5. 보수위원회 규정

별첨.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I.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당사는 주주 협약에 의거하여 주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받은 후보들에 대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소극적 자격요건, 책임성, 윤리성, 충실성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II.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016.3.28. 서면결의	
2. 위원회의 구성	총 3 명(사외이사 2 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여부
이원중	현)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전)UBS 그룹 아태지역경영실 실장	참석
조윤제	현)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전)주 영국 특명 전권 대사 역임	참석
이봉연	현)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참석

III.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

1. 조윤제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나. 후보자 경력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2008.3 ~ 현재)
다. 사외이사 경력	
	사외이사 기간: 2012 년 6 월부터 주요사안: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라. 후보제안자: 이원중	
1) 인적사항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2) 후보자와의 관계	회사 이사회 대표이사와 구성원
3) 추천 이유	사외이사로서의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모두 충족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회사 이사회 구성원
2) 대주주와의 관계	UBS AG 추천

3) 임원과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충족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추천
2) 적극적 요건		
가.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1 호 (전문성)	충족	경제 전문가 (교수)
나.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2 호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다.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3 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 책임감 소유
라.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4 호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충족	충족	
3) 현재 겸직 업무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주)GS 사외이사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추천 결의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2012.6 부터 사외이사로서 성실히 활동하였으므로 사외이사로 적합하다 평가하여, 후보로 추천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첨부 참조

2. 심재우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나. 후보자 경력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1996.3 ~ 현재)		
다. 사외이사 경력		
사외이사 기간: 2013 년 6 월부터 주요사안: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라. 후보제안자: 이원중		
1) 인적사항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2) 후보자와의 관계	회사 이사회 대표이사과 구성원	
3) 추천 이유	사외이사로서의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모두 충족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회사 이사회 구성원	
2) 대주주와의 관계	UBS AG 추천	
3) 임원과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충족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추천
2) 적극적 요건		
가.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1 호 (전문성)	충족	국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펀드회사에서 펀드 감독 및 국내 회사의 경영 자문 (공학박사)
나.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2 호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다.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3 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 책임감 소유
라.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4 호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충족	충족	
3) 현재 겸직 업무	단국대학교 교수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추천 결의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2013.6 부터 사외이사로서 성실히 활동하였으므로 사외이사로 적합하다 평가하여, 후보로 추천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첨부 참조

3. 오재환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외환은행 고문 및 외환은행 강남영업본부장 역임		
나. 후보자 경력		
외환은행 강남영업본부장(2009.8). 외환은행 고문(2013.1)		
다. 사외이사 경력		
사외이사 기간: 2014 년 3 월부터		
주요사안: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라. 후보제안자: 이원종		
1) 인적사항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2) 후보자와의 관계	회사 이사회 대표이사과 구성원	
3) 추천 이유	사외이사로서의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모두 충족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하나금융투자(주) 추천	
3) 임원과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충족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추천
2) 적극적 요건		
가.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1 호 (전문성)	충족	금융전문가 (은행 영업 업무 담당)

나.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2 호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다.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3 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 책임감 소유
라.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4 호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회사 이사회 구성원
2) 적극적 요건 충족	충족
3) 현재 겸직 업무	하이셈 비상근 감사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추천 결의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2013.6 부터 사외이사로서 성실히 활동하였으므로 사외이사로 적합하다 평가하여, 후보로 추천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첨부 참조

4. 이봉연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근무	
나. 후보자 경력	
외환은행 (1994.2 ~ 2014.12),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2015.1~ 현재)	
다. 사외이사 경력	
사외이사 기간: 2015 년 3 월부터 주요사안: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라. 후보제안자: 이원중	
1) 인적사항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사외이사로서의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모두 충족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하나금융투자(주) 추천

3) 임원과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충족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추천
2) 적극적 요건		
가.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1 호 (전문성)	충족	금융 전문가 (은행에서 영업 및 재무업무 담당, 금융지주회사 재무업무 담당)
나.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2 호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다.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3 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 책임감 소유
라.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제 4 호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예상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없음	
2) 적극적 요건 충족	충족	
3) 현재 겸직 업무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근무, 하나자산운용(주) 사외이사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추천 결의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2013.6 부터 사외이사로서 성실히 활동하였으므로 사외이사로 적합하다 평가하여, 후보로 추천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첨부 참조

첨부.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조윤제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1970),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1976), 미국 Stanford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박사(1984)

경력: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2008.3 ~ 현재)

이사회 활동 내역:

사외이사 기간: 2012 년 6 월부터

주요사안: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이원종 위원 추천

UBS AG 추천

법령 상의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하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 충족

기타 결격 사유 없음

심재우

학력: 미국 뉴욕 브루클린 과학고등학교 졸업(1977),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 생물공학과 학사(1982),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 화학공학과 석사(1984),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 화학공학과 박사(1993)

경력: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1996.3 ~ 현재)

이사회 활동 내역:

사외이사 기간: 2013 년 6 월부터

주요사안: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이원종위원 추천

UBS AG 추천

법령 상의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하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 충족

기타 결격 사유 없음

오재환

학력: 대전고등학교 졸업(1977),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84)

경력: 외환은행 강남영업본부장(2009.8). 외환은행 고문(2013.1)

이사회 활동 내역:

사외이사 기간: 2014 년 3 월부터

주요사안: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이원종 위원 추천

하나금융투자(주) 추천

법령 상의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하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 충족

기타 결격 사유 없음

이봉연

학력: 마산고등학교 졸업 (1985),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1992),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1994)

경력: 외환은행 (1994.2 ~ 2014.12),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2015.1~ 현재)

이원종 위원 추천

하나금융투자(주) 추천

이사회 활동 내역:

사외이사 기간: 2015 년 3 월부터

주요사안: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법령 상의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하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 충족

기타 결격 사유 없음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및 이봉연은 전문성 경력 등에 비추어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업무 수행을 할 충분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추었으며, 법령 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키므로, 사외이사 후보로 적합하다 평가.

첨부 1.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하나유비에스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UBS Hana Asset Management Company Ltd 라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 -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에 한함
 - 2.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중개에 한함
 - 3.집합투자업 - 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 4.투자자문업무
 - 5.투자일임업무
 - 6.콜거래업무
 - 7.어음매입업무
 - 8.기타 제 1 호 내지 제 7 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②회사는 제 1 항의 업무 이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등) 회사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되 동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사백만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육백만주로 한다.

제 8 조(주식의 종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9 조(주권) ①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 종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주권에는 아래의 문구가 영문 및 국문으로 기재된다.

“본 주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주식 이전은 정관 및 회사 본점에 비치되어 있는 2007. 5. 11.자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이와 같은 승인이 없는 한 주식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주주명부에 기재될 수 없다.”

제 9 조의 2 (주식의 양도제한 등) 주주가 그 소유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사전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제 10 조(주권의 불소지) ①주주가 그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때에는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그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수리하고 절차를 완료한 때에 회사는 그 사실을 기재한 통지서를 주주에게 발송한다.

③제 1 항의 신고를 한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제 2 항의 청구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1 조(신주인수권) ①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 340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외자유치, 긴급한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경영상의 목적으로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2 조 <삭제>

제 13 조 <삭제>

제 14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가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5 조(주식명의개서등) ①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절차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주식사무규정에 따른다.

②회사 명의개서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1 항의 주식사무취급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주주 등의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 또는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대리인은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주주 또는 등록질권자가 외국에 거주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가주소 또는 대리인을 정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회사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신고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⑤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결산기가 끝나는 다음날로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삭제됨>

제4장 주 주 총 회

제 21 조(소집시기) ①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 월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2 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7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 24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25 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 37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사 전원이 유고시에는 출석주주
중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자가 된다.

제 26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7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8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의 2(성립정족수)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결권부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가 직접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통해 출석한 경우에 성립된다. 본 조의 성립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개최는 그 효력이 없다.

제 30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30 조의 2(특별결의사항) 다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수의 증감 또는 납입자본금의 감소
3.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
4.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양수
5. 합병
6.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7. 기타 한국 상법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
8. 회사의 배당정책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배당 승인

9.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영업의 확장을 포함) 관련법령(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포함)을 준수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자본금의 20%에 달하기까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주 대하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달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 증권 또는 권리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발행 직후 이러한 증권 또는 권리에 따라 주식이 발행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증권 또는 권리의 조건에 따라 최대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위 제 9 호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
11.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달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 증권 또는 권리를 발행하는 경우
- 제 30 조의 3(주주총회의 진행)** 모든 주주총회는 영어로 진행되며, 이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한다. 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배포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준비되어야 한다. 영어본과 한국어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등기를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결의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본에 따른다.
- 제 31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제 32 조(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6 인 이상으로 한다.
②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이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합하여 “비사외이사”라 한다)와 사외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는 이사 총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1 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최소 3 인 이상이어야 한다.
- 제 33 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4 조(이사의 임기)** 비사외이사의 임기는 3 년 이하로 하며, 사외이사의 임기는 1 년 이하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 35 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32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6 조(대표이사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 제 37 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자문 또는 보좌하며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③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8 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9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③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매분기마다 적어도 1 회 이상의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이사회의 의장이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중 1 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만약, 이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7 일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하며, 이사회의 안전 및 참고자료는 적어도 회의일 7 일 전에 한국어와 영어로 각 이사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회 개최장소는 대한민국 서울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곳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40 조(이사회 성립정족수와 결의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이사회 결의는 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적어도 2 인 이상의 비사외이사가 찬성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회의를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6.21 개정)

③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0 조의 2(이사회 특별결의사항) 다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 중 2/3 이상의 찬성 및 비사외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정관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2. 회사의 배당정책에 대한 일체의 변경
3. 통상적인 영업과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 5 억원 이상의 자산(또는 이에 대한 지분)의 취득, 매도, 담보설정 기타 처분 또는 해당 사업년도 중 취득, 매도, 담보설정 기타 처분한 자산(또는 이에 대한 지분) 가액의 총계가 금 20 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4. 차입금의 총액이 금 50 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로 차입한 금액이 10 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단,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영업의 확장을 포함) 관련법령(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포함)을 준수하기 위하여 증자에 갈음한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회사 이외의 제 3 자를 위한 보증, 담보제공, 채무부담 기타 재무적인 의무의 부담
6. 주주 또는 그 계열사와 체결하는 단일 계약(또는 일련의 관련된 계약)으로서 회사가 수령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금 5 억원 이상이거나 그 계약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계약 또는 이사 또는 이사의 특수관계인과의 계약
7. DIMCO/DI&S Distribution Agreement 및 DIMCO/Hana Distribution Agreement 의 해지, 연장 또는 동 계약 상의 권리의 포기
8. UBS/DIMCO Trademark License Agreement 또는 Hana/DIMCO Trademark License Agreement 의 중대한 변경, 그 해지, 연장 또는 동 계약 상의 권리의 포기
9. 회사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상품과 현저하게 다른 성격의 상품을 신규로 도입하는 행위
10. 상품 또는 서비스의 브랜드에 대한 중대한 변경
11. 관련 법령 또는 한국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대한 회계 정책 및 관행의 채택 또는 그 중대한 변경
12. 사업의 범위 또는 성격에 대한 중대한 변화

13. 회사 내부규정의 채택, 변경 또는 폐지(단, 이러한 채택,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원래 본 정관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던 행위가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
14.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설치 또는 동 위원회 규정의 채택(단, 동 위원회가 본 정관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던 행위를 관장하게 되거나 또는 동 규정으로 인하여 원래 본 정관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던 행위가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
15. 주식 양도의 승인
16.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또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 또는 채무의 금액이 금 20 억원을 초과하는 계약(또는 일련의 관련된 계약)의 체결
17. 자회사(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회사의 자본금이 회사 직전 회계연도 말 순자산의 10%를 넘는 경우 또는 자회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회사의 자본금이 회사 직전 회계연도 말 순자산의 10%를 넘는 경우
18. 회사 주식의 공모,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행위(이와 관련하여 투자은행 또는 재무 자문사를 선임하는 행위 또는 관련법령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 3 자에 대하여 등록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를 포함함)

제 41 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1 조의 2(이사회 진행) 모든 이사회 회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한다. 이사회의 의사록 및 이사들에게 배부되는 모든 문서(안건을 포함)는 영어와 한국어로 준비되며, 만약 영어본과 한국어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제 42 조(위원회) ①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경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위험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42 조의 2(경영위원회)

①제 4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비사외이사 총 3 인으로 구성한다.

②경영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 및 경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경영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3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상임이사의 보수는 사전에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4 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5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제 19 조 제 1항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④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한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 중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⑧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제 46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7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8 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9 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 1 항 및 제 2 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제 3 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 49 조의 2(재무제표의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KOREAN GAAP) 및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각각 작성된다. 회사의 회계장부는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된다.

제 50 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공고) ①이사는 제 49 조 제 1 항의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제 49 조 제 2 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1 조(손익계산과 처분)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결산기의 총수익으로부터 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순손익금으로 하고 이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합하여 다음 방법에 따라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52 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 월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8 장 보 칙

제 53 조(세부사항) 회사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시행한다.

제 54 조(규정의 사항)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나 상법,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제 33 조 제 1 항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 3 조(제 1 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제 1 기 사업년도는 이 회사 성립일로부터 2001 년 3 월 31 일 까지로 한다.

제 4 조(발기인 주소·성명) 당 회사 발기인의 성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부 칙(1) 이 정관은 2002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정관은 2004 년 6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정관은 2007 년 2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정관은 2007 년 7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정관은 2009 년 6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정관은 2010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

제 1 조 (시행일) 제 40 조 제 2 항은 2012 년 6 월 21 일부터, 제 48 조는 2013 년 4 월 1 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 2 조 (사업년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회사의 제 14 기 사업년도는 2013 년 4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부 칙(8) 이 정관은 2016 년 7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2.

지배구조내부규범

2016.07.25. 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1) 이 규범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경영의 적법성,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회사 정관 및 타 내부규정 등과 함께 이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법령과의 관계) 이 규범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계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이 규범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 3 조 (제정 및 개폐) 이 규범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에 따른 경우나 단순한 용어변경 등 내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규범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 2 장 이사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 구성원은 6 인 이상으로 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 총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1 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최소 3 인 이상이어야 한다.
(4) 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1)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한다.

(2) 이사회 의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 7 조 (이사의 자격요건) (1)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정직성을 가져야 한다.

(2) 상임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임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 8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1)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제 9 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1)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과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사항
3. 이사회 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0 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1) 이사는 주주 및 회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4)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의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진다. 단,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 11 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이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3년 이하
2. 사외이사: 1년 이하, 단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2 조 (이사의 퇴임 기준과 절차) (1)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 만료
2. 사직
3.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에서 정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등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를 해임하기로 하는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2) 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라도 법정수를 결하지 않을 때는 그 보궐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임된 경우, 피선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 13 조 (이사회회의 소집절차)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매분기마다 적어도 1회 이상의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이사회의 의장이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중 1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만약, 이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이사회 의 안건 및 참고자료는 적어도 회의일 7일 전에 한국어와 영어로 각 이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4) 이사회 의 개최장소는 대한민국 서울로 하되 이사회 의 결의로 다른 곳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14 조 (의결권 의 행사) (1) 이사회 는 재적이사 과반수 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이사회 의 결의는 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의 과반수 의 찬성으로 하되, 적어도 2인 이상의 상임·비상임이사가 찬성하여야 한다.

- (2) 이사회 는 이사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회의를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 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3)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15 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1) 이사회 는 이사회 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 의 운영 및 사외이사 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이사회 는 이사회 의 운영 및 사외이사 의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한다.
- (3) 이사회 는 사외이사 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방법을 정하고, 평가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시에 참고한다.

제 3 장 이사회 내 위원회

제 16 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경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위험관리위원회

(2) 이사회 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 는 해당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다만, 제 1항 각 호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한다.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 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제 17 조 (경영위원회) (1)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총 3 인으로 구성한다.

(2) 경영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 및 경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3) 경영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8 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3 조 제 1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5)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 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19 조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2)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 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인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최대주주는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6) 회사의 준법감시부서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7) 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그 직무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에 따른다.

- 제 20 조 (보수위원회) (1) 보수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 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2) 보수위원회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3) 보수위원회는 연 1 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보수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보수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5) 보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보수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하며,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 (7)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8) 회사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보수 중 성과보수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 할 것
 2.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할 것. 다만, 담당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작도록 할 것
 4.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할 것
- (9) 회사는 임원 및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 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시한다.

(10)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 제외), 감사위원, 업무집행책임자, 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등 임원의 유형별 총액(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보수총액)으로 작성한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 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체계의 주요 특성
3.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가.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 수를 포함한다)
 - 나.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 다.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 라.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 마.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바.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를 포함함)

(11) 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2)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위험관리위원회) (1) 위원회는 2 인 이상 3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회사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6)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1)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 23 조 (임원의 범위) 이 규범에서 임원이라 함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총칭한다.

제 24 조 (등기이사인 임원의 자격요건) 등기이사인 임원의 자격요건은 제 7 조 (이사의 자격요건)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 25 조 (등기이사 아닌 임원의 자격요건) (1)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2)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전문적 지식 및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3)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 선임 시 관련 법령상 임원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 26 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가 정한 업무분장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상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회사의 내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7 조 (임원의 선임) (1) 등기이사인 임원의 선임은 제 11 조(이사의 선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3)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원 후보로 추천한다.
- (4)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임원 후보로 추천한다.

제 28 조 (임원의 퇴임) (1) 이사인 임원의 퇴임은 제 12 조에 따른다.
 (2)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처리하며 제 4 호 및 제 5 호의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임기의 만료
2. 사직
3. 회사의 인사규정상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인사관련 제 내규에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임원으로서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 29 조 (임원 및 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임원 및 임원후보자는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 내부 또는 외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0 조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수) 임원의 (i) 성과에 대한 평가주체·방법·절차·지표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ii) 임원 보수의 구성내역·지급방법 등 보수체계는 인사관련 제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 31 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업무 담당 지원부서 등은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간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 규정에서 이를 정한다.

제 32 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제 33 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 및 공시) (1) 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기관 등의 예비후보 추천을 받아 결정하며,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를 선임한다.
 (2) 회사는 최고경영자후보 추천 및 선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 34 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1) 회사는 임원의 임기를 상당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에 보고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임원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최고경영자의 임기, 역할, 권한 위임 사항, 최고경영자의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6.08.0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배제) 회사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 조원 미만인 경우, 제 20 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한다.

첨부 3.

감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 ① 위원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과 적용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3 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이사회, 집행기관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후보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제 5 조(위원장 및 간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감사업무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 6 조(감사보조조직)

- ①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두거나, 컴플라이언스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감사업무 담당부서 혹은 컴플라이언스팀은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5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 2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에게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권한 및 직무

제 9 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 10 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사의 회계감사
2. 회사 전반의 업무감사
3.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4.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한 승인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제 11 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보고)

-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1 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감사의 위임)

-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실시, 및 검사결과 처리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② 담당부서장은 전항에서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 9 조와 제 11 조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제 14 조(감사결과 처리) 담당부서장은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2. 규정 또는 제도의 개선
3. 관계직원에 대한 주의, 문책 또는 변상

제 15 조(조치결과 보고)

- ①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부서장은 감사결과 통보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정해진 기일 내에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담당부서장은 감사결과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16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 년 10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규정은 2008 년 11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규정은 2016 년 9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4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정 2016. 9. 8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42 조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6 조 제 1 항에 의하여 설치한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선임한 2 인 이상 3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일반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위원장이 선임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제한 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 (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 1 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각 위원이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일 3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 4 조 (임무 및 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
 -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8)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관계부서 및 직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 또는 외부의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제 1 항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결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 6 조 (리스크/Front To Back 위원회) 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리스크/Front To Back 위원회(이하 “리스크/F2B 위원회“라 한다)라는 하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리스크/F2B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리스크/F2B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험관리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로서 해당 안건을 재심의 또는 재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심의 또는 결의는 위원회의 재심의 또는 재결의로 대체된다.

제 7 조 (부문별 위험관리) 각 부문별 위험관리는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의사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조 (주관부서) 위원회와 관련된 실무는 위험관리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9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5.

보수위원회 규정

2016. 9. 8.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 (회의 소집)

-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각 위원에게 회의 최소 1주일전에 소집사실을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 조 (임무 및 권한)

- ① 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
 -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3) 보수체계의 설계, 운영 및 그 설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포함)
- ② 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회사의 주주가 적용 받는 제반 법규정을 준수한다.

제 5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위원회가 개최된 후 동 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추가 권고사항이나 승인사항은 이메일을 포함한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토의 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위원회에 출석한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의사록으로 입증된다.
-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의사록의 작성 및 보관)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의사진행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9 월 8 일부터 시행한다.